

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간 재 산 유 상 이 관 협 약 서

※ 재산의 표시(이하 '재산'이라 한다)

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대장가액(원)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0-2, 10-33	대	1,313.1	3,365,307,950

서울특별시교육감과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산에 대하여 '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'(이하 '교특회계'라 한다)와 '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(주차장관리계정)'(이하 '교통회계'라 한다) 간에 다음과 같이 상호 유상이관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재산가액) '교특회계'와 '교통회계'가 상호 유상 이관할 금액(당초 매입금액 및 부대비용)은 대장가격으로 다음과 같다.

1. 교특회계 소관 토지 대장가격 : 3,365,307,950원
2. 교특회계에 납부할 교통회계 금액 : 3,365,307,950원

제2조(유상이관 방법) ① '교특회계'와 '교통회계'간에 위 재산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한다.
② '교통회계'에서 '교특회계'계정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등기사항 변경) ① 위 표시 재산의 등기 사항 변경은 제1조에서 정한 금액의 납부가 완료된 후 '서울특별시'가 이행한다.
② 제1항의 등기사항 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'서울특별시'가 부담한다.
③ 등기사항 변경 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'서울특별시교육감'과 '서울특별시'는 서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산의 인도 및 사용) ① '서울특별시교육감'은 2020년 1월 1일에 '서울특별시시장'에게 재산을 인도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인도가 되지 않을 경우 '서울특별시시장'은 재산 사용에 관해 「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6조에 규정된 대부료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.

제5조(책임부담) ① '서울특별시교육감'은 유상이관 한 재산에 대해 인도 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, 처리비용도 지원하지 않는다.

② '서울특별시교육감'은 재산 인도전에 부과된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.

제6조(협약조항의 변경) 본 협약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'서울특별시교육감'과 '서울특별시시장'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'서울특별시교육감'과 '서울특별시시장'이 기명날인하고,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.

2019년 12월 3 일

서울특별시
교육감 조희연 [인]



서울특별시
시장 박원순 [인]

